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신영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신영마라톤소득공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영마라톤소득공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 |
|---|---|
| 1. 집합투자기구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신영마라톤소득공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AQ055)
(C형: AQ056, Ce형: AQ057, S-T형: AQ058) |
| 2. 집합투자기구 분류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
|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신영자산운용(주) (02-6711-7500) |
| 4.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syfund.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5. 작성기준일 | 2015년 10월 1일 |
|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5년 10월 30일 |
| 7. 모집(매출)증권의 종류 및 수
[모집(매출) 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 좌) |
|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
| 9. 존속기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
|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 나. 투자설명서 |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www.kofia.or.kr | |
|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 www.syfund.co.kr | |
| 각 판매회사 본·지점 | |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의 보증 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 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의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MMF펀드(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 가능합니다.
9. 폐쇄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유동성 제공을 위해 상장이 되더라도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환금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11. 외국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해당 국가에서 적용되는 법령 등에 따라 일부 기재항목은 기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기재가 생략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대신 기재될 수 있으니 투자판단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2. 후취 판매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 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제 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3.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집합투자기구는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 **투자신탁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조에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을 투자하여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2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서 서민과 젊은 세대의 목돈 마련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기본운용전략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재산의 90% 이상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로 모투자신탁의 운용 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신영마라톤 증권 모투자신탁 F1 호(주식)	주요투자대상	- 주식 70% 이상 - 채권 및 어음 40% 이하
	투자목적	주로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가격상승에 따른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함
	주요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 주식에 주로 투자 - 저평가된 자산의 자본증식 등을 추구함 - 이 집합투자기구는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원본을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

* 상기 투자전략은 시장상황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KOSPI 90% + CD 91일물 10%

(3) 위험관리

당사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회사 전체의 위험 정책을 관리하며 투자 가이드라인을 설정합니다. 리스크관리본부에서 자산별, 펀드별 거래한도 및 투자한도를 점검하며, 핵심 위험요인을 측정, 관리합니다. 정기적으로 운용부서 및 운용본부장에게 포트폴리오 위험, 기준지수 대비 성과, 요인분석 및 추적오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 시 대표이사 이하 관계자들이 사후 조치 및 재발 방지대책을 결정합니다.

3.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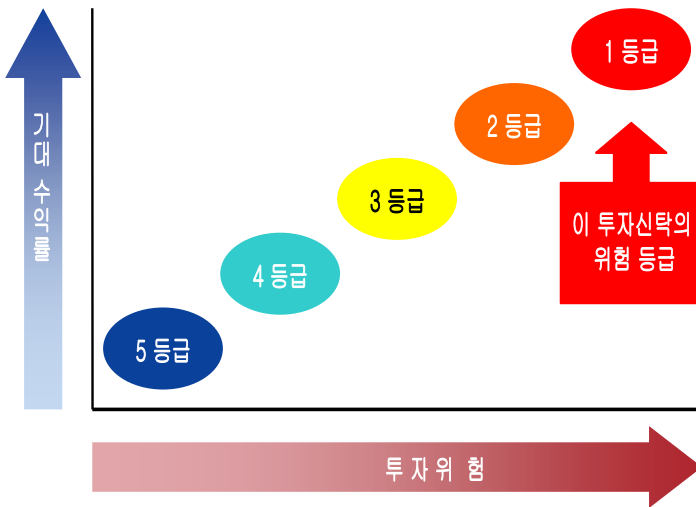
이 이 투자신탁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식가격 변동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일부를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당해 투자신탁의 가치도 일정수준 하락하게 됩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은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레버리지위험	주식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은 적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효과(지렛대 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주1)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90% 이상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에 노출되면서도 고수익을 추구하는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며, 5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가장 높은 1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주식은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상기 위험등급 분류는 신영자산운용(주)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습니다.

5. 운용전문인력

(기준일: 2015.10.1.)

◆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규모	
허남권	1963	자산운용 부문장	119개	79,030억원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신영증권 영업 및 상품운용 -현 신영자산운용 자산운용부문장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허남권, 1개, 64억]

(주1)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자산운용 본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 페이지 (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규모	
김대환	1971	투자전략본부 부 본부장	0 개	0 억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현 신영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 본부장
윤하국	1983	선임운용역	13 개	1,781억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현 신영자산운용 마라톤가치본부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 없음]

(주1)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자산운용 본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 페이지 (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투자신탁 운용인력>

신영마라톤 증권 모투자신탁 F1호 (주식)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규모	
책임	허남권	1963	자산운용 부문장	119개	79,030억원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신영증권 영업 및 상품운용 -현 신영자산운용 자산운용부문장
부책임	김대환	1971	투자전략본부 본부장	0 개	0 억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현 신영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 본부장
부책임	윤하국	1983	선임운용역	13 개	1,781억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현 신영자산운용 마라톤가치본부

6.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

[단위:%]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차
		2014/03/17~ 2015/03/16
신영마라톤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주식)운용	2014-03-17	7.53
비교지수	2014-03-17	3.44
신영마라톤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주식)C형	2014-03-17	6.26
비교지수	2014-03-17	3.44
신영마라톤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주식)Ce형	2014-03-17	6.63
비교지수	2014-03-17	3.44
신영마라톤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주식)S-T형	2014-04-24	
비교지수	2014-04-24	

(주 1) 비교지수 : KOSPI 90.0%, CD91 10.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6-1. 집합투자기구의 가입자격 및 세제혜택 등

구분	주요 내용
가입자격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단,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 가입 이후 소득공제 유지요건(총 급여 8,000만원 이하) 초과시 당해연도 소득공제 불가
가입기한	2015년 12월 31일
가입기간	최소 10년 이상
납입한도	연간 600만원
세제혜택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단, 소득공제를 통해 감면받는 소득세액의 20%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별도 부과)
중도해지	5년 이내 해지시 소득공제로 감면 받은 세액상당액 추징 ※ 투자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한 경우 감면 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주1)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15 등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제혜택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해당 사항 없음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 (종류)	지급비율(연간, %)						증권 거래 비용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비용	총보수· 비용	
C	0.4600	0.7000	0.0180	0.0120	0.0114	1.2014	0.2571
Ce	0.4600	0.3700	0.0180	0.0120	0.0142	0.8742	0.2466
S-T	0.4600	0.3500	0.0180	0.0120	0.0124	0.8524	0.2213
지급시기	최초보수계산일로부터 매 3개월				사유 발생시	-	사유 발생시

-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하여 기타비용 비율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하여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주 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 및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 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였습니다.
- (주 4)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 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단, 모투자신탁의 기타비용은 자투자신탁의 실적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이에 따라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 또한 추정치입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하여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1,0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원)

구분	1년	3년	5년	10년
C	120	379	664	1,511
Ce	87	276	483	1,100

S-T	85	269	471	1,072
-----	----	-----	-----	-------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투자수익률은 5%,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2) 신탁보수는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치(NAV)변동에 따라 다소 유동적입니다.

2. 과세 :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15.4%, 내국법인 15.4%)을 부담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6 및 동법 시행령 제 93 조의 2
가입자격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 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려는 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매년 6.30.이전에 가입 시에는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도 가입 가능함
가입기간	2015.12.31.까지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일 기준)
저축계약기간	최소 10년 이상
가입한도	연 600 만원 이내 (모든 금융회사에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합계액을 말함)
세제혜택	납입액의 40% 공제(연 240 만원 한도). 단, 소득공제를 통해 감면받는 소득세액의 20%에 대해서는 <u>농어촌특별세 별도 부과</u> . 다만, 10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 등의 인출시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감면세액추징	가입 후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 또는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 등을 인출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 납입한 총 누계액에 일정비율(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지방소득세 포함시 추징세액 증가). 다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1.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2. 해지 전 6개월 이전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저축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바.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 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 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6 및 동법 시행령 제 93 조의 2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저축에 대한 과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1)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및 정식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1)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syfund.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매입 및 환매 절차

구분	오후 3시 이전	오후 3시 경과 후
매입	<p>-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제 2 영업일 (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p style="text-align: center;"> </p>	<p>-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제 3 영업일 (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p style="text-align: center;"> </p>
환매	<p>-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 2 영업일 (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p>- 제 4 영업일(D+3)에 환매대금을 지급</p> <p style="text-align: center;"> </p>	<p>-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 3 영업일 (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p>- 제 4 영업일(D+3)에 환매대금을 지급</p> <p style="text-align: center;"> </p>

4. 전환 절차 및 방법 (펀드 내 전환) : 해당사항 없음

III 요약재무정보

항 목	제1기	
	2015.03.16	
운용자산		33,997,032,434
유가증권		33,459,043,278
파생상품		0
부동산/실물자산		0
현금 및 예치금		49,092,677

기타 운용자산	488,896,479
기타자산	39,630,175
자산총계	34,036,662,609
운용부채	0
기타부채	2,423,136,726
부채총계	2,423,136,726
원본	31,613,525,883
수익조정금	0
이익조정금	0
자본총계	31,613,525,883
운용수익	1,244,630,202
이자수익	6,584,435
배당수익	0
매매/평가차익(손)	1,238,045,767
기타수익	0
운용비용	1,731,772
관련회사보수	0
매매수수료	81,772
기타비용	1,650,000
당기순이익	1,242,898,430